

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지원직, 운전업무) 채용공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등

- ☐ 모집분야 및 인원 : 특정직(지원직, 운전업무) 1명
- ☐ 직위 주요업무*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등
* 입사 후 내부사정에 따라 차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변경 가능

2. 지원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및 입사 불가)
- ☐ 공고마감일 기준 ①운전직 근무경력 5년 이상(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산정 시 제외)이고 ②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및 ③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자

[①운전직 근무경력 관련 용어 정의]

- 운전직 근무경력은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운전 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폐업회사인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 운전업무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근무 예정지(서울)에서 채용 시점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3. 채용조건

- ☐ 고용형태 및 입사시기 : 특정직(무기계약직)*, '22.2월말 입사 예정
* 약 3개월 수습기간 부여 후 근무평가를 통해 수습해제 여부 결정
- ☐ 근무장소 : 서울(업무 등의 사유로 전국지역 출장 운행 가능)
*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본사 또는 전국 지사에 근무 가능
- ☐ 보수수준(세전) : 기본연봉 37,422천원(성과급 및 수당 등 별도)

4.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2.1.18(화) ~ **2.2(수) 17:00(오후 5시)**
 - ※ 마감시간(17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처리하실 것
-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khfc.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5. 전형 절차 및 일정

- ☐ 전형 일정 및 합격배수(전형절차별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18(화)~2.2(수)
서류전형(8배수)	2월 중
면접전형	2.11(금) 오후 예정(서울)
신체검사	2월 중

6. 우대사항

-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및 불성실기재자(아래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정의 참고)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각 전형별)

* 보훈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7. 제출서류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 운전경력증명서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22.2.2. 이후,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 ※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직 근무 경력증명서 등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징구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범규위반 조회 기간을 "전체경력"으로 발급하여 제출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효력을 갖지 않음

□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닐 경우 합격 취소)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실시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모두 해당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
-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 경쟁률 8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 경쟁률 8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적격자 판단 기준 : 만점의 40% 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면접전형

-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논리성, 전문지식,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세부사항은 첨부한 “전형별 평가기준” 참고)
-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면접 실시 가능 (면접 방식은 추후 결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 각 전형 진행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9. 기타사항

-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khfc.saramin.co.kr>)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 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 시 ①보훈대상자 > ②장애인 > ③사회적 배려 대상자 > ④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①~③ 중 동일한 가점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의 경우 가점 비율이 높은 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 “경력 및 경험기술서” 항목 득점 순

☐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